

아동청소년 위해관련 법령

I. 아동학대

1. 아동학대의 개념

아동학대란, 만 18세 미만인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대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아동복지법(제3조 제7호)에 규정합니다.

다만,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2. 아동학대의 유형

아동학대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가. 신체적 학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말하며(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71조 제1항 제2호), 대표적으로는 폭행, 상해, 체벌 등 직·간접적으로 아동의 신체에 가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정서적 학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말합니다. 아동에게 욕설, 폭언, 협박을 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도 포함됩니다(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제71조 제1항 제2호).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고 판단합니다.

다. 성적 학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며(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성학대가 성폭력범죄에 해당할 경우에는 경합하여 처벌됩니다.

라. 유기·방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 제71조 제1항 제2호).

3. 보호·감독자에 의한 아동학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2호,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가중처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2분의 1까지 형이 가중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8호).

5. 공소시효의 특례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

이는 아동학대범죄가 피해아동의 성년에 이르기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진행을 정지시킴으로써 보호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18세 미만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도7273 판결 아동복지법위반).

II. 성폭력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아동·청소년의 정의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1호).

2.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유형

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한 사람,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사람,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말하며,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성폭력처벌법 제7조)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한 사람,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한 사람,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사람, ⑤ 13세 미만의 사람

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말하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중하게 처벌됩니다.

다.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① 장애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말함)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19세 이상의 사람,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사람(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1항), 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2항), ④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사람, 위계나 선불금,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려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사람,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사람,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사람(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사람은 처벌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Ⅲ.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범죄 유형

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청소년보호법 제11조)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사람,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사람,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사람,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사람은 처벌됩니다.

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청소년보호법 제11조의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그러한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청소년보호법 제15조의2)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아동·청소년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을 만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을 할 의사를 표현하거나 그 의사의 실현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유인·권유 또는 협박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처벌됩니다.

IV. 디지털 성범죄

1.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처벌됩니다.

2.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반포등 (성폭력처벌법 제14조)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 ②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이하 ‘반포’라 함) 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사람,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되며, ④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도 처벌됩니다.

3. 허위영상물 등의 제작·반포등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①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함)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편집등”이라 함)한 사람, ②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편집물등”이라 함)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반포등을 한 사람 또는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사람,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등 행위를 한 사람, ④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은 처벌됩니다.

V.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의 보호

1.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가. 응급조치(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응급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나. 임시조치(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해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への 상담 및 교육 위탁,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국선변호사 선정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검사는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

라. 상담 등 치료 지원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29조 제1항).

2.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가. 상담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피해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업무,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형사상 소송과 피해배상청구 등의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46조).

나. 영상물 삭제 등

사법경찰관리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이 항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같은 항 제9호의 게시판의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촬영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촬영물등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피해자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3조의2).

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19세 미만 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3. 성폭력 가해자 처벌의 부수처분

가.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3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1항).

나.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사람에게 대하여 취업제한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그 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그 판결의 확정일부터 일정기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50조).